

의안번호	2218921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6. 6. 30.
추계번호	26C2580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2조 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	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호공백 우려가 구의 발굴, 현장 확인, 긴급지원 연계 및 사회보장급여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12조의2 (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)	(제2항) 보장기관의 장은 안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서의 장, 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공백 상태가 있거나 그 우려가 높 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사람을 통보받은 경우, 지체 없이 현장 확인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※ (안 제11조의2) 경찰서의 장, 검찰청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은 미성년자, 65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보호자의 체포, 구속, 수용, 장기 부재 또는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보호공백 상태에 있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(제3항)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조사 결과 보호 공백이 확인되거나 그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긴급복지 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연계, 사회보장급여의 직권신청, 통합사례관리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2조 (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2조의2 (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)	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보호공백 우려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, 관련 정보를 수집·처리하며, 해당자들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집행하는 등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보호공백 우려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 및 관련 정보 처리 방법을 알 수 없고, 신규로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될 보호공백 우려가구의 수와 지원 내용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- 안 제11조의2는 보호공백 우려 가구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보호공백 우려 가구에 해당될 사람의 수와 이들에게 신규로 제공될 정부 지원의 내용을 알 수 없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(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제정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